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
신고자	성명	연락처	주민등록번호
	신고기관 []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[] 감독기관 [] 수사기관 [] 감사원 [] 국민권익위원회		
	위원회 신고 접수번호	접수일자	신분공개 동의 여부 [] 동의 [] 비동의
	이첩·송부 일자	이첩·송부 내용	
위반행위 신고사항	피신고자 성명	피신고자 소속기관	피신고자 연락처
	신고내용		
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	[]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()		
	[]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(수사기관:)		
	[]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(관할법원:)		
	[]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		
	[]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()		
	[]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(수사기관:)		
[]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			
[] 수사기관 ()			
[]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			
[]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			
조사 결과의 처리이유			
기타 사항			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
조사기관

○○○기관장

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